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2018년 9월 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8월 22일, 박기열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8년 9월 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기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도로(차도, 보도)의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도블록 파손, 포토홀 등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 운영중인 도로시설물·도로부속시설물 신고 포상금에 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도로를 포함시키고자 함. (안 제48조 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 없음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·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해서만 고장 및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, 도로(차도·보도) 자체에 대한 포트홀(pot hole)이나 보도블록의 파손 등의 신고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.
- 현재 서울시가 도로(차도·보도) 파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할만하다 여겨짐.

[표] 개정안 주요 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<u>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</u> 과 교통안전시설·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<u>고장</u> 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</u>	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<u>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</u> <u>고장</u> <u>파손</u> , - - - - - - - - <u>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* 도로: 차도, 보도

* 도로시설물: 교량, 터널, 고가차도, 입체교차, 지하차도 등

* 도로부속물: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, 휴게시설, 시선유도표지, 중앙분리대, 과속방지시설, 통행료 징수시설, 도로관제시설, 도로관리사업소, 도로표지, 교통측정시설, 낙석방지시설 등

* 교통안전시설: 신호기, 안전표지

* 교통관리시설: 지능형 교통체계, 버스전용 차로 단속시스템 등

□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

- 현행 조례 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 시설물·도로부속물·교통안전시설·교통관리시설(이하 '도로교통시설'이라 한다)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의 '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, 시장은 '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'을 조례가 정한 상한(원상회복 비용의 5/100) 이내에서 「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·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」으로 다음 [표]와 같이 규정하고 최초신고자에게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(상품권 가능)을 지급하고 있음.

[표] 도로시설물 등 고장·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(현행 규칙 별표1)

구 분		포상금액	
신고내용 (포상금 지급대상)	산정기준		
차량신호등, 보행신호 등 및 보조 장치 고장 신고(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	신고 건	10,000원	
손괴 원인자 신고 (제2조제1항제3호)	도로시설물, 도로부속물, 교통안전·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	200천원 이상~ 600천원 미만	10,000원
		600천원 이상~ 1,000천원 미만	30,000원
		1,000천원 이상	50,000원

-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를 통해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신호기 고장신고가 연평균 3,000건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나머지 도로교통시설의 손괴원인자 신고가 2건이

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홍보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.

[표] 최근 5년간 도로교통시설 고장·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

구 분	발생년도	포상건수	포상금액 (천원)	비고
손괴원인자 신고	2014	1	50	상품권 지급
	2015	-	-	
	2016	1	30	
	2017~2018.8현재	0	0	
교통신호기 고장신고	2014	4,167	41,670	
	2015	3,250	32,500	
	2016	3,469	34,690	
	2017	2,468	24,680	
	2018.8현재	1,706	17,600	

□ 거리 및 차도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

- 이처럼 도로교통시설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‘도로’ 자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없다 보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‘거리모니터링단’과 ‘차도모니터링단’을 운영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임.
- 먼저, ‘거리모니터링단’의 경우 효율적인 보도(歩道)관리를 목표로 보행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, 모니터링단에게는 매월 자원봉사실적(4건당 1시간/1일 8시간)을 인정하고 실적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음.

[표] 거리모니터링단 시장표창 수여현황('14년~18.8월) - 보도환경개선과

구 분	총 계	2014년		2015년		2016년		2017년		2018년	
	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
시장표창 (반기별1회) ※부상없음	120명	10명	10명	15명	15명	15명	15명	15명	15명	10명	-

- 다음으로, 원활한 차도(車道)관리를 위해 ‘차도모니터링단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개인택시조합과 (주)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차도모니터링단 운영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택시 및 버스에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 운행 중에 발견되는 포트홀 등 도로파손 상황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이들 신고자(택시·버스 운전자)에게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 제37조제1항1) 및 제56조제2항2)에 근거하여 시장방침으로 정한 다음 [표]의 지급기준(매년 예산범위에서 조정)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,

[표] 차도모니터링단 포상금 지급기준(2018년 기준) - 도로관리과

택시모니터 요원	500건 초과	150건~500건	150건 미만	비교
	20만원	10만원	5만원	‘17년 수상자 평균실적: 200건/6개월
버스모니터 요원	100건 초과	40건~100건	40건 미만	비교
	20만원	10만원	5만원	‘17년 수상자 평균실적: 81건/6개월

- 포상금 지급 취지는 동감하나 포트홀 등의 일상적인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대형재난에 근간을 둔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

1) 제37조(재난위험요인의 신고)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·자치구청장·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2) 제56조(재정지원)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전관리 기본조례」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,

-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본 조례에 근거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.

[표] 서울시 도로 및 도로교통시설 유지관리에 민간 활용 현황

구분	활동주체	주요활동	지원내용	지원근거
도로	보도	거리모니터링단 보도블록 파손, 물고임, 보행 장애물 적치, 불법 주·정차 등	-자원봉사 실적인정 -시장표창	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구성·운영 계획 (도로관리과-8619, '12.5.14.)
	차도	차도모니터링단 (택시, 버스) 재난위험요인(도로파손, 포트홀 등) 신고	-포상금 지급 -시장표창	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
도로교통시설	일반시민	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	-포상금 지급	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

□ 안 제48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 건

- 본 개정안은 안 제48조제1항에 신고대상으로 ‘도로’를 추가하면서 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”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있음.
- 이는 서울시가 ‘거리모니터링단’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서 규칙이 정한 소정의 필요경비(8천원/일 4시간 이상)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

개정안 시행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여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.

□ 맺음말

- 도로(차도·보도) 상에 발생하는 포트홀이나 보도블록 파손 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시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,
-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의 효과와 그 한계에 기초할 때, 본 개정안과 같이 신고포상금 대상에 도로의 파손도 포함하여 일반시민들도 함께 도로 파손 신고에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도로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본문 중 “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”을 “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”로, “고장”을 “고장·파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
계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

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·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<u>고장</u>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신 설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----- ----- --- 고장·파손, ----- ----- -----. 다만,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